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9호 2020. 9. 1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22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065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13호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22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9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1길 20-16	2020.09.09.	기존건물 멸실	여량면 여량리 367
2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3길 57	2020.09.09.	기존건물 멸실	북평면 북평리 754-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7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065호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희망자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정 선 군 수

- 1. 접수기간 : 2020. 9. 11. ~ 9. 25.(15일간)
- 2. 장 소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 3. 양도대상 차량
 - 소 유 자 : 김**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7길 **)
 - 차량번호 : 강원51바1076
- 4. 접수대상 :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관내 거주자 중 다음 조건을 갖춘 자임.
 - 가. 양수 기본자격 대상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1) 운전경력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동안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

-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동안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공고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 , 나) 운전경력 합산자

-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단,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1/2로 환산 적용,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거주기간 등

가)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 관내에서 1년간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나) 공고일기준 과거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자.

나. 운전경력이 위 가항에 해당신청자가 없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및 정선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양수자 등의 기본자격을 완화하여 적용함.

5. 접수 제외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

6. 구비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가용운전 경력의 경우 채용관련 증빙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원부, 기타 운전경력 입증서류)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7. 접수결과 조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요건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나. 접수된 신청자 명단은 개인택시정선군지부(☎592-2580)로 통보하게 되며, 개인택시 양도자와 계약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안전과(☎560-2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13호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정선군의회회장

1. 추진배경

- 정선군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지원신청 및 현지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일 이후 기 면허

3. 예고기간 : 2020. 9. 8. ~ 9. 14 (6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7.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
8.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강원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4.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5. 좋은 식단 실천업소
6.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 및 위생관련 단체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8.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위생용품 등 지원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7. (생략)
8. 식품접객업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